

## 심천면 복지회관 내부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

영동군 심천면 복지회관 내부 보안강화와 시설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. 2. 15.

심 천 면



1. 사 업 명 : 심천면 복지회관 내부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
2. 시 행 청 : 영동군 심천면사무소
3. 관련근거
  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제한)
  -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)
  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  -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(행정예고의 대상)
4. 공고방법 : 영동군(심천면) 홈페이지 (<http://yd21.go.kr>)
5. 행정예고(공고) 및 의견제출 기간 : 2016. 2. 15 ~ 2016. 3. 6 (21일간)
6. 촬영범위 및 시간 : 심천면 복지회관 내부 24시간 연속촬영

## 7. CCTV 설치예정 장소

연번	설치장소	대수	비고
1	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로6길 2-11 복지회관 내부(1,2층)	2대	동영상
위치도			

## 8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(별지서식)를 작성하여 영동군 심천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다. 의견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FAX

- 우편 : (29103)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로 104

심천면사무소 주민복지팀

- FAX : 043)745-8311

라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심천면사무소 주민복지팀(740-5907)

마. 기 타 :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바. 공청회 개최계획 : 없음

[별지 서식]

## 의견제출서

행정예고명	『심천면 복지회관』 내부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		
의견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생년월일
	주소		전화번호
설치예정위치	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
『심천면 복지회관 내부 보안용 CCTV설치』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  2016년    월    일 제출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			
심천면장 귀하			